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대표적 원격 취락항로인 서해 5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동절기 안정적인 운항 여건을 마련하고, 서해 5도에 근거지를 둔 여객선에 대한 지원으로 서해 5도 주민의 육지출타 1박2일 생활권 확보
- 서해 5도 항로의 안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과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출발지 및 종착지를 육지에, 중간기항지를 서해 5도에 두고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동절기 (매년 12월~익년 2월)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액은 여

객선별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출발지 및 종착지를 서해 5도에, 중간기항지를 육지에 두고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연간 결손액의 60%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액은 여객선별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1부.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해 5도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해역을 말한다.
2.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4. “유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여객선 운항 시 일일 유류비에서 일일 운항수입(여객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포함한다)을 감한 금액에 대하여 여객선사가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지급된 것을 말한다.
5. “동절기”라 함은 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를 말한다.
6. “결손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여객선 운항에 따른 연간 지출(유류비, 선원 및 사무인력 인건비, 선박수리비, 선박·선원·여객 보험료, 대체선박 용선료, 선박용품비, 선박재산세 등 선박관련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운항관리비, 전산매표 관련 비용, 선원 도서 체류 숙박비에 한정한다)에서 연간 수입(여객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포함한다)을 감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여객선사가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지급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발지 및 종착지를 육지에, 중간기항지를 서해 5도에 두고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여객선을 운영하는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여객선별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시장은 자금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해당 월의 정산자료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며,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익월 2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매일 왕복의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않은 여객선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다만, 기상악화, 정기휴항, 정기검사, 긴급한 수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항 및 결항은 예외로 한다.

- 제4조(보전금의 지원)** ① 시장은 출발지 및 종착지를 서해 5도에, 중간기항지를 육지에 두고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연간 결손액의 60% 범위 내에서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전금은 해당 여객선을 운영하는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 ③ 보전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여객선별로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시장은 자금을 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군수와 여객선사가 합의하여 선정·의뢰한 공인회계사가 작성 또는 검증한 해당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전금 지급을 신청하며,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매일 왕복의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않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경고를 하고, 연간 경고횟수가 3회에 달할 경우 3회차 경고와 동시에 해당연도 보전금의 지급 제외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정기휴향, 정기검사, 긴급한 수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향 및 결향은 예외로 한다.

제5조(예산의 분담) 시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 및 보전금의 일정액을 군에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약) 군수는 보조금 및 보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관계공무원의 조사 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보조금 및 보전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정요구나 환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u>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u>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8. <u>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질의회신 내용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보조금 지원 조례

질 의 회 신

[질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항률이 높은 여객선을 대체하는 동일수준의 여객선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동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제29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특별법 제29조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9조제1항제8호는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여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

○ 특별법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의2호는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객선 유류비 차액 지원이 그 구체적인 지원금 지출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동조 제2항에 따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특별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2014-10-27 조례 제 35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서지역의 동절기 여객선 정상운행을 위해 선박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선박용 유류비(이하 “유류비”라 한다)”란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로 오갈 때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여객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를 말한다.
4. “유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여객선 운항시 유류비에서 운항수익을 감한 금액에 대해 여객선사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서지역 관할 군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지급된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도서지역 관할 군수에게 동절기 유류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지역 관할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 일정액은 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기간은 매년 동절기 1월에서 2월까지로 한다.

③ 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도서지역 관할 군수에게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도서지역 관할 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도록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수사업 면허를 받고 여객선을 취항하는 해상여객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해상여객운수사업자는 매년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 도서지역 관할 군수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절기 도서지역 주민 수송계획 수립)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여객선사는 동절기 도서지역 주민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여객선 정기검사 시 대체 여객선에 대해 도지사, 도서지역 관할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여객선사는 대체여객선 기준을 본 여객선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 체결) 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여객선사에게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게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여객선사는 보조금 지원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3조 제1항

-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발지 및 종착지를 육지에, 중간기항지를 서해 5도에 두고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제1항

- 시장은 출발지 및 종착지를 서해 5도에, 중간기항지를 육지에 두고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연간 결손액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조금 및 범위(제3조)

-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
- 여객선별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및 범위(제4조)

- 여객선별 연간결손액의 60%
- 여객선별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추계 결과

(2014. 11월 현재 운항여객선 기준, 1년 소요예산)

구분	항로별	선사별	선사별	지원액(원)	비고
계				463,233,790	
동절기 유류보조금 (12~2월)	백령 항로	JH훼리	하모니 플라워호 (2,071톤)	19,581,790	오전 인천 출발
		고려고속 훼리	코리아킹호 (530톤)	44,862,000	오전 인천 출발
	연평 항로	고려고속 훼리	플라잉 카페리호 (573톤)	-	오전 인천 출발
연간 결손보전금	백령 항로	우리고속 훼리	씨호프호 (299톤)	398,790,000	오전 백령 출발

※ 비용산출 개요 참조(붙임)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입							
	소계						
세출	동절기 유류 보조금 및 결손보전금	463,234	486,396	510,715	536,251	563,064	2,559,660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324,264	340,477	357,501	375,376	394,145	1,791,762
	일반회계	324,264	340,477	357,501	375,376	394,145	1,791,762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138,970	145,919	153,215	160,875	168,919	767,898
민 간							
기 타							